

(13) 근로자우대저축특약

제 1 조(저축한도 등) 이 저축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분기 15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납입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로이 입금할 수 있다. <개정 02.1.1>

제 2 조(해지의제) 삭제 <01.6.10>

제 3 조(과세처리) 이 저축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과세처리한다. <개정 02.1.1>

1. 거래처가 가입자격, 저축한도 등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때
2.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한 때
3. 저축계약기간 만기일 후에 발생한 이자